

지정번호 제 호

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

- 명칭:
- 소재지:
- 대표자:
- 지정조건: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 법인을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